

# 서울고등법원

## 제 6 형 사 부

### 결 정

사 건 2006초기317 재정신청  
신청인 김명호  
서울 동작구 상도동 415 중앙하이츠빌 105동 1504호  
피 신청인 1. 이용훈  
2. 이광범  
불기소 처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. 8. 10. 2006년 형제79341호 결정  
결 정 일 2006. 9. 11.

### 주 문

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.



### 이 유

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, 본건 고소는 고소 내용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고소에 대하여 각하처분을 하였다.

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검사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,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.

위 등본입니다  
2006년 9월 15일  
서울고등법원  
법원사무관 노영수

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재판장	판사	서	명	수	
	판사	김	동	아	
	판사	김	춘	호	